

보수규정

| | | |
|----|---------------|---------|
| 제정 | 2011. 10. 20. | 규정 제 5호 |
| 개정 | 2013. 1. 7. | 규정 제13호 |
| 개정 | 2013. 11. 6. | 규정 제15호 |
| 개정 | 2014. 4. 22. | 규정 제19호 |
| 개정 | 2014. 11. 19. | 규정 제25호 |
| 개정 | 2014. 12. 24. | 규정 제26호 |
| 개정 | 2015. 3. 13. | 규정 제29호 |
| 개정 | 2015. 9. 23. | 규정 제31호 |
| 개정 | 2015. 12. 21. | 규정 제36호 |
| 개정 | 2017. 1. 10. | 규정 제4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잡월드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수의 구분)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직원의 직급·경력·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3.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4. "월지급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각종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등을 말한다.

6. "일할 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산정

제4조(보수의 구성) 잡월드의 이사장 및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연봉 외 수당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연봉) ① 이사장 및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의 직급별 기본연봉표에 따른다.

② 신규채용직원의 기본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정한다.

1. 신입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직급별 기본연봉표 1등급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반영한 등급에 따른다.

2.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12조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반영한 등급에 따른다.

③ 직원의 기본연봉 조정은 직급·경력·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제6조(성과연봉 책정)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되, 평가대상 직원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 월지급액의 최저 0%에서 최고 600%를 지급한다.

② 직원의 성과평가 등급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사장의 성과연봉 지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잡월드는 직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두되,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위원회와 부서별 성과를 평가하는 부서성과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개인성과평가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부서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성과평가는 개인별 성과평가 및 부서별 성과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인별 성과평가는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등을 반영한다.

⑤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성과연봉의 지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본연봉 변경책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변경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직급을 달리하여 임용될 경우
 2. 보수체계를 개편하였을 경우
- ②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한 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정직, 직위해제, 휴직 직전의 기본연봉으로 지급한다.

제3장 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9조(기본연봉의 지급)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월지급액은 해당 월분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필요시 이 사장이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월지급액의 산정) ① 월 중간에 신규 임용된 사람의 월지급액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복직·직위해제·감봉·정직·강등·휴직 등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월지급액을 전액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2.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당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다만,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함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결근을 하는 경우

② 월지급액의 계산기간은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월지급액의 일할 계산은 그 달의 월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파견자의 보수) ① 잡월드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잡월드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국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잡월드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등의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 ①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연봉 월지급액의 8할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② 공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연봉 월지급액의 6할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결근자의 보수)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일수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6개월간 기본연봉 월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2. 그 밖에 직위해제자는 기본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해당자가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또는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감봉·정직·강등 처분기간 중의 보수) ① 감봉처분을 받은 사

람의 보수는 그 기간 동안 평균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한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평균보수월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월지급액은 그 기간 동안 기본연봉 월지급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③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8조 제1항 1호에 의거 기본연봉을 다시 책정하며, 인사규정에 따라 3개월간 월지급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직무대리의 보수) 직무대리의 기본급은 원직을 기준으로 지급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각종 수당은 직무대리직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각종 수당

제17조(법정수당)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령

이 인정하는 수당을 별표 2(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가족수당) 직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그 밖의 수당) ① 직원에게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직책수당을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기술직 직원 중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2에 따라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산직 제외) 단, 기술자격수당의 지급은 인사규정 제20조의 수습임용이 끝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수당의 지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장 퇴직연금 등

제22조(퇴직연금제 등) ① 잡월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임직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재해보상금) 임,직원이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잡월드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계약직원 보수) 계약직원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보수의 조정) 이사장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보수를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는 「시간선택제 근로 운영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잡월드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 시기) 제20조제3항의 기술자격수당은 해당 조문이 신설된 날이 속한 달의 기본 연봉 월 지급일부터 지급한다.<신설 2013. 1. 18.>

부칙< 2013.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3. 11. 6.)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설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4. 4. 22.)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4. 11. 19.)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4. 12.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설 2015.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2015.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 제2항 제1호는 이 규정을 개정된 날 이후의 신규채용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신설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신설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7. 1. 10.>

직급별 기본연봉표

《이사장의 기본연봉표》

| | |
|------|--------------|
| 직급 | 이사장 |
| 기본연봉 | 124,043,352원 |

《직원의 기본연봉표》

(단위: 원)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 1 | 44,928,985 | 39,143,375 | 35,354,268 | 28,532,541 | 24,361,196 |
| 2 | 45,667,188 | 39,883,568 | 36,023,640 | 29,129,808 | 24,954,050 |
| 3 | 46,352,093 | 40,629,433 | 36,670,417 | 29,726,891 | 25,546,902 |
| 4 | 47,029,415 | 41,316,748 | 37,328,491 | 30,334,824 | 26,150,169 |
| 5 | 47,763,777 | 42,062,612 | 37,941,139 | 30,889,420 | 26,699,086 |
| 6 | 48,507,699 | 42,812,251 | 38,610,510 | 31,529,173 | 27,335,678 |
| 7 | 49,183,100 | 43,609,072 | 39,290,987 | 32,179,790 | 27,980,560 |
| 8 | 49,860,409 | 44,415,366 | 40,039,690 | 32,904,897 | 28,687,663 |
| 9 | 50,598,611 | 45,215,962 | 40,708,855 | 33,544,651 | 29,311,534 |
| 10 | 51,397,680 | 46,018,479 | 41,457,778 | 34,237,938 | 29,946,017 |
| 11 | 52,192,964 | 46,822,877 | 42,172,575 | 34,995,244 | 30,622,101 |
| 12 | 52,929,246 | 47,625,396 | 42,978,000 | 35,688,348 | 31,370,833 |
| 13 | 53,730,235 | 48,426,005 | 43,715,185 | 36,402,787 | 32,119,750 |
| 14 | 54,514,079 | 49,232,285 | 44,531,922 | 37,106,545 | 32,816,450 |
| 15 | 55,318,868 | 50,032,894 | 45,258,016 | 37,863,850 | 33,554,783 |
| 16 | 56,055,137 | 50,780,639 | 46,108,867 | 38,610,293 | 34,293,298 |
| 17 | 56,840,915 | 51,581,262 | 46,993,623 | 39,431,616 | 35,042,017 |
| 18 | 57,634,278 | 52,385,661 | 47,776,661 | 40,252,745 | 35,842,766 |
| 19 | 58,431,470 | 53,190,046 | 48,661,417 | 41,020,719 | 36,664,330 |
| 20 | 59,171,550 | 53,988,788 | 49,432,728 | 41,756,296 | 37,382,029 |
| 21 | 59,966,821 | 54,800,712 | 50,363,103 | 42,641,640 | 38,182,778 |
| 22 | 60,765,903 | 55,601,349 | 51,202,449 | 43,516,107 | 39,035,558 |
| 23 | 61,561,172 | 56,405,747 | 52,064,804 | 44,422,391 | 39,919,539 |
| 24 | 62,293,641 | 57,453,719 | 53,006,077 | 45,233,048 | 40,793,118 |
| 25 | 63,085,140 | 58,248,685 | 53,981,890 | 46,075,510 | 41,614,682 |
| 26 | 63,880,396 | 59,003,981 | 54,843,831 | 46,885,958 | 42,415,431 |
| 27 | 64,981,974 | 59,897,097 | 55,727,111 | 47,632,610 | 43,153,748 |
| 28 | 65,868,557 | 60,586,307 | 56,511,610 | 48,549,548 | 44,037,926 |
| 29 | 66,660,027 | 61,330,276 | 57,294,441 | 49,296,399 | 44,776,244 |
| 30 | 67,457,190 | 62,076,153 | 58,088,555 | 50,053,310 | 45,608,405 |

[별표2]<개정 2013. 11. 6>

각종 수당 지급기준

| 구분 | 지급율 및 지급액 | 비고 |
|-----------|---|----|
| 시간외 근무수당 | 월액 통상임금/209 × 1.5 × 시간수 | |
| 야간근무수당 | 월액 통상임금/209 × 0.5 × 시간수 | |
| 휴일근무수당 | 월액 통상임금/209 × 1.5 × 시간수 | |
| 연차휴가근로수당 | 월액 통상임금/209 × 8시간 × 일수 | |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부양가족: 월 20,000원 | |
| 직책수당 | 본부장 : 월 1,000,000원 팀장 : 월 500,000원 | |
| 기술자격수당 | 기술사 : 월 50,000원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 월 30,000원 기능사 : 월 20,000원 | |
| 급식(중식)보조비 | 월 130,000원 | |
| 교통보조비 | 월 130,000원 | |